

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① 사업자등록번호		② 법 인 명	
③ 대 표 자 성 명		④ 전 화 번 호	
⑤ 소 재 지		⑥ 사 업 목 적	
⑦ 사 업 연 도		⑧ 설 립 근 거 법	

1. 자산보유현황

구 분		금 액
⑨ 총자산가액		
자 산 종류별	⑩ 토 지	
	⑪ 건 물	
	⑫ 예·적금등 금융자산	
	⑬ 주식·출자지분 등	
	⑭ 기 타	

2. 수입금액 현황

구 분		금 액
⑮ 총수입금액		
수 입 원천별	⑯ 금 융	
	⑰ 부동산	
	⑱ 기타 수익사업	
	⑲ 사업외손익	
	⑳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	
	㉑ 공익목적사업	

3. 세무확인결과

⑳ 위 반 금 액	㉒ 외부전문가 종합의견

4.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

㉔ 구 분	㉕ 성 명	㉖ 사업자등록번호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라 보고합니다.

년 월 일

공익법인 대표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
세무확인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
세무확인자 성명 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제출서류	1.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집계표(별지 제32호서식 부표 1) 2.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(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) 3. 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(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) 4.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부적정명세서(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) 5. 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불이행 등 명세서(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) 6. 보유부동산 명세서(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) 7.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또는 수지계산서)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

작성 방법

1. 자산보유현황

- 가. ⑨란의 총자산가액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는 세무확인 대상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적습니다.
- 나. ⑩란부터 ⑭란까지의 자산종류별 가액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해당 계정과목의 금액을 적습니다.

2. 수입금액 현황

- ⑮ 총수입금액란은 공익법인등의 운영성과표상 공익목적사업과 금융, 부동산 등 발생 원천별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각각 수익총액을 적습니다.
- ⑯ 사업외손익란은 공익목적사업 외 기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외 손익을 적습니다.
- 예)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자산처분손익 등
- 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란은 「법인세법」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적습니다.
- ⑱ 공익목적사업란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에 기재된 공익목적사업의 수익금액을 적습니다.

3. 세무확인결과

- 가. ⑳란은 부표 1의 ⑮ 위반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나. ㉑란은 세무확인 결과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종합검토의견을 간략히 적습니다.

4.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

- 가. ㉒란의 구분은 외부전문가의 직업인 변호사·공인회계사·세무사 또는 법무법인·회계법인·세무법인 및 합동사무소 등 소속법인명을 적습니다.
- 나. ㉓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외부전문가의 사업자등록번호(법인소속 등의 경우 해당법인 또는 합동사무소 등의 사업자등록번호)를 적습니다.
- 다. 외부전문가가 4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인적사항을 별지로 적습니다.

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결과 집계표

사업연도		공익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(단위 : 원)					
구분	세 무 확 인 항 목			적정여부 ⑮	위반금액 ⑯
	① 합 계				
출연재산 보고 등	②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[별지 제23호서식]				
	③출연재산 운용소득 매각대금의 사용계획및 진도내역서 [별지 제24호서식]				
	④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[별지 제25호의2서식]				
	⑤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[별지 제25호의3서식]				
	⑥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[별지 제25호의4서식]				
	⑦주식(출자지분) 보유명세서 [별지 제26호서식]				
	⑧이사 등 선임명세서 [별지 제26호의2서식]				
	⑨특정기업을 위한 광고 등 명세서 [별지 제26호의3서식]				
외부전문가 의 세무확인	⑩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 명세서 [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]				
	⑪수혜자 선정 부적정 명세서 [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]				
	⑫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내역 부적정 명세서 [별지 제32호서식 부표 4]				
	⑬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 불이행 명세서 [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]				
	⑭ 보유부동산 명세서 [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]				

세무확인자	성명	(서명 또는 인)
	성명	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가. ⑮란은 공익법인 제출서류의 관련 법 규정에 대한 위반 여부 등 세무확인 결과를 적습니다.

나. ⑯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출원재산의 가액 또는 운용소득금액 및 지출비용 등을 적습니다.

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앞 쪽)

사업연도				법인명				사업자등록번호				
(단위 : 원, m²)												
사 용 수 익 재 산						사 용 수 익 의 귀 속 자			⑩ 정상 대가	⑪ 사용 대가	⑫ 사용 수익금액 (⑩-⑪)	⑬ 비고
① 재산 종류	② 출연(취득) 일 자	③ 출연자	④ 소 재 지	⑤ 수 량 (면 적)	⑥ 가 액	⑦ 성 명	⑧ 주민등록번호 (사업자등록번호)	⑨ 출연자 등 과의 관계				
합 계												

작성방법

※ 작성대상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3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에게 임대차·소비대차 및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·수익하게 한 재산을 적습니다.

1. ⑥사용수익재산 가액란은 해당 재산에 대하여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습니다.
2. ⑨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해당 공익법인 또는 출연자와의 관계를 적습니다.
3. ⑫사용수익금액란은 ⑩란의 정상대가에서 ⑪란의 실제 사용대가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4. ⑬비고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세제외 사유를 적습니다.

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서식 부표 3] <신설 2012.2.28>

수혜자 선정 부적정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사업연도		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	--	-----	--	---------	--

(단위 : 원, m²)

[illegible]

작성 방법

※ 작성대상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혜자 선정이 부적정한 경우를 적습니다.

1. ④가액란은 부적정한 수혜자 선정으로 제공된 재산 또는 경제적이익 등 수혜금액을 적습니다.
2. ⑩출연자등과의 관계란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과 출연자등과의 관계를 적습니다.
 - * 친족의 범위는 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 제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
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내역 부적정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사업연도		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	--	-----	--	---------	--

(단위 : 원, m²)

[illegible]

작성방법

※ 작성대상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」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운용 및 수익사업의 내역상 운용·수익사업소득에 대한 탈루사항 등을 적습니다.

* 다만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7조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31조에 따라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과, 출연받은 재산 등을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이 임대차 등 사용·수익으로 그들에게 귀속되는 경제적이익 상당액을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라 작성한 것은 제외합니다.

1. ⑦적정수익금액란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, 건전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시가를 적습니다.
2. ⑧유형란은 수익금액의 오류 또는 탈루유형을 적습니다.
(예) 수입이자누락, 매출누락 등
3. ⑨금액란은 누락된 수익금액 및 ⑦란의 적정수익금액과 실제 수익금액의 차액을 적습니다.
4. ⑩적요란은 해당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소득의 부적정한 내용을 간략히 적습니다.
(예) - 출연재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으로 매각한 경우 그 내용 등
- 무수익자산의 취득 등 수익사업 운용상의 부적정한 내용 등

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 쪽)

사업연도		공익법인명		사업자등록번호	
------	--	-------	--	---------	--

1. 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 불이행 내역

① 구 분		②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	③ 작성·비치 의무 불이행 장부 등	④ 비 고
공익목적 사 업				
수 익 사 업 명				

2.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

⑤ 구 분		⑥ 제 출 여 부	⑦ 미제출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	⑧ 누락 또는 오류 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
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[별지 제23호서식]				
출연재산·운용소득·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 역서 [별지 제24호서식]				
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[별지 제25호의2서식]				
재산매각대금 사용명세서 [별지 제25호의3서식]				
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서 [별지 제25호의4서식]				
주식(출자지분)보유 명세서 [별지 제26호서식]				
이사 등 선임명세서 [별지 제26호의2서식]				
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[별지 제26호의3서식]				

작성방법

1. 장부의 작성·비치의무 불이행 내역

※ 작성대상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1조에 따라 공익법인등의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의 운용내역, 수익 사업에 대한 장부와 중요한 증빙서류의 작성·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적습니다.

* 다만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97조 및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31조에 따라 세무사가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익사업에 대한 신고를 한 것은 제외합니다.

가. ①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명란은 해당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명칭을 적습니다.

나. ②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및 출연재산금액란은 장부의 작성·비치 의무를 불이행한 금액을 적습니다.

다. ③작성·비치의무 불이행 장부 등란은 해당 공익목적사업 및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작성·비치해야 할 복식 부기형식의 장부로서 의무를 불이행한 주요 장부 또는 장부와 관련된 중요한 증빙서류를 적습니다.

2. 출연재산 명세 보고 등 불이행 내역

※ 작성대상
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출연 재산명세 등의 이행여부에 대한 사항을 적습니다.

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서식 부표 6] <신설 2012.2.28>

보유부동산명세서

[illegible]